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6일, 한지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0.)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2.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변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지아의원)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를 풀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하려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암관리법」 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과 전대(轉貸)에 관한 근거를 두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와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부금의 모집에 대하여 동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법률의 목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법에 의하여서도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 등을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 점,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질 경우 지방의료원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은 국립중앙의료원에게 일반재산의 무상 대부만 가능한데, 개정안은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수익까지 허용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것)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는 환자·내원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또는 전대 등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자의 기부에 관한 제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수정안

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에 있어 현행법에 따른 무상 대부뿐만 아니라 사용·수익도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 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삭제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수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제15조의2(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특례)</u> <u>①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 모집절차, 사용처 등 기부금품의 모</u>	<u><삭제></u>

	<u>집 · 관 리 · 사 용 에</u> <u>필요한 사항은 대</u> <u>통령령으로 정할</u> <u>수 있다.</u>	
--	---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중 “대부”를 “대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할”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에”를 “대부, 사용·수익에”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 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u>대 부</u> 할 수 있다.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 ----- ----- ----- <u>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u>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u>대부</u> 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u>대부, 사용·수익에</u> ----- ----- -----.
<u><신 설></u>	<u>제16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u> ① <u>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 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 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대(轉貸) 할 수 있다.</u> ② <u>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u>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
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
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
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
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
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